

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2. 2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12. 5

다. 상 정 일 자 : 제62회 사하구의회(정기회)

제7차 총무사회위원회(97.12.13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강명종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이 97. 1. 13 및 97. 5. 31에 제정 97. 6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 제5조, 제9조, 제17조의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,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
-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
-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, 정기회 분기 1회, 임시회는 의장필요시
-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하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둠
-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함
- 구·동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들 두고,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분장사무와 구성 규정을 두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함
- 통합방위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 대비책을 규정
-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적의 침투,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동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마련,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 '97. 1. 13 제정 공포되고, 시행령을 '97. 5. 31 제정 공포하여 '97. 6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조례에 규정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 시행코자하는 사항으로서

-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을 정하고, 안 제2조에는 심의 사항을 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,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하여 의장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되고, 그 구성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, 의결정족수,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사무,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행령 제7조 제2항, 제3항, 제4항의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입니다.

- 안 제6조의 통합 방위 지원 본부는 법 제9조 제1항,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7조 취약지 관리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28조에 정한 주요내용을 여건에 맞게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토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